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성일종 · 김기현 · 김미애
김석기 · 인요한 · 최수진
강승규 · 고동진 · 박덕흠
한기호 · 김장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관에 대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, 행정부의 공무원이 되는 일,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.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 소속 법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.

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닌 법관들의 사조직 활동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. 법관의 사조직 결성·가입·참여 등은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법원과 법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책이 요구됨.

이에 현행법에 법관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적 조직 또는

정치적 목적의 단체의 결성, 가입,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원과 법관,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임(안 제49조제7호 신설)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서로 다른 법원[지원(支院) 및 시·군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]에 속한 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창립·결성해 가입·참여·활동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사교·친목단체

나. 운동·취미·여가 등을 위한 동호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조직의 결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7호의 개정규정 중 “창립·결성” 부분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창립·결성된 조직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금지사항)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9조(금지사항) ----- ----- 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서로 다른 법원[지원(支院)</u> <u>및 시·군법원을 포함한다.</u> <u>이하 이 호에서 같다]에 속한</u> <u>법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하</u> <u>는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</u> <u>적의 단체를 창립·결성해 가</u> <u>입·참여·활동하거나 또는</u> <u>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</u> <u>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</u> <u>단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</u> <u>하다.</u> <u>가.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</u> <u>·동창회 등 사교·친목단</u> <u>체</u> <u>나. 운동·취미·여가 등을</u> <u>위한 동호회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7. (생 략)	